

여러분의 피난·방화시설은 안전한가요?

피난·방화시설이란?

화재시 피난하는데 사용하는 계단, 비상구 등과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화문, 방화벽 등으로서 계단(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등을 말한다.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사례

위반행위

1.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

-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창 설치
- 화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
- 식창살, 합판 등으로 비상구의 개방을 막는것

2.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을 철거·제거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를 제거
- 방화문에 고임장치를 설치

3.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방화구획·내부 마감재료를 변경하는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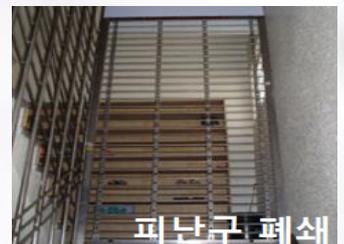
4. 피난·방화시설 등의 장애유발 행위

-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장애물 설치
- 계단, 복도(통로), 출입구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위반행위 사진



잠금장치



피난구 폐쇄



방화문 훼손



고임장치 설치



물건적치(계단)

법적조치(300만원 이하 과태료)

-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 문의전화 :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교육훈련팀 (☎031-8012-6323)

